

의 안 번 호	18-18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3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사유

- 가. 상위법령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충되는 조문 정비
- 나. 정부조직법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“인정시장의 인정 취소(안 제10조)” 및 “임시 시장의 개설 취소(안 제14조)” 조문 삭제.
- 나. “예산의 지원(안 제 22조)” 및 “보고 및 자료제출(안 제25조)” 조문의 제출 기한과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
- 다. 정부조직법 개정[법률 제14839호(2017. 7. 26.)]에 따른 소관부처 장 변경(중소기업청장 → 중소벤처기업부장관)
- 라.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8. 1. 11. ~ 2018. 1. 31.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: 원안 동의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(2018.02.09.)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
조례안 1부
- 6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

·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 을”을 “따른 상점가를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정부 · 서울특별시 · 마포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”를 “제19조”로 한다.

제22조제4항 중 “14일”을 “2개월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0일”을 “20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, 제20조”를 “제20조”로, “제29조까지”를 “제30조 까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

제2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마포구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
제28조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(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986호)를 폐지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청장은 임시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의 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21조(상인회 등록 등) ① 정부
· 서울특별시 · 마포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22조(예산의 지원) ① ~ ③ (생략)

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, 부가가치세환급금,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25조(보고 및 자료제출) ① (생략)

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1조(상인회 등록 등) ① 제19조-----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예산의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 2개월 -----

---.

제25조(보고 및 자료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20일 -----.

1.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,
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
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
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
 2.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
산관리 현황

〈신 설〉

제28조(시설물의 철거)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,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인가할 수 있으며,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20조 -----
----- 제30조
까지 -----
 2.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
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
금 사용내역
 3.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
제5항에 따라 마포구로부터
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
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
비 집행 내역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손정우
연락처	02-3153-8584